

[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]
[심 사 보 고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 출 일 : 2003. 4. 8.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4. 10.

다. 상정일자 : 2003. 4. 12.

(제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 13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및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
-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함 (안 제8조)
 - 3분의 1이상 ⇒ 100분의 30이상
- 입지보조금 (안 제12조)
 - 분양가의 차액 일부보조 ⇒ 정상 분양가의 50%초과 불가,
제조업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지원 불가
-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함 (안 제13조)

- 20명 초과 1인당 30만원 ⇒ 20명 이상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
- 2억원 한도 삭제
-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(안 제14조)
 - 내국인 신규고용 50명 이상 ⇒ 20인 이상
- 시설 보조금 연차별 투자 계획의 경우 투자기간을 공장사업개시일, 공장증설된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(안 제15조)
- 보조금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관련 사항을 신설함 (안 제23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비율 축소, 입지보조금 지원범위 조정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의 외국인 투자비율 축소, 입지보조금 지원범위 조정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